

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7일
피상속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	업종	등록번호		
	사무소 소재지			
상속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
「골재채취법」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
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신고인 제출서류	1.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자산평가액보고서 3. 골재채취용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국가기술자격증(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